

농림축산식품부

주 의 요 구

제 목 ○○○○○지원사업 정산시 검정 부적정

기 관 명 강서구, 기장군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및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표 1】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표 1】 2015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

근거법령	지원조건	사업예산(단위 : 천원)			주요사업
		계	국고	지방비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국 비 70% 지방비 30%	165,160	136,020	29,140	- 규산 : 유효규산 함량 157ppm미만 - 석회 : 산도(ph) 6.5미만

「농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면 토양개량제 공급

업자는 토양개량제를 해당지역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마을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되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농가별로 배분하고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를 농가별로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에 대금을 지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300포 이상 공급시 현장 확인),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해당 농협으로부터 마을이장이 서명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농가가 서명한 인수 및 살포 집계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면밀히 검정을 실시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2015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표 2】와 같이 관할 농협이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 일부가 미흡 하거나 미제출한 상태로 보조금을 청구하였는데도 관련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표 2】 2015년 토양개량제 보조금 증빙서류 미제출 현황

군·구	관할지역 농협	증빙자료 제출 여부			③300포 이상 현지 확인	비 고
		①공급 확인서	②인수 및 살포 집계표			
			농가 서명	살포 확인		
강서구	○○농협	○	○	○	×	
	○○농협	○	×	○	×	② 농가서명 없이 통장 일괄확인
	○○농협	○	×	○	×	② 농가서명 없이 통장 일괄확인
	○○농협	○	○	×	×	② 통장 확인없음
	○○농협	○	○	○	×	① ○○○→○○○ 대리확인 (‘15.4.2)
	○○농협	○	○	○	비대상	
기장군	○○○농협	○	×	○	×	② 농가서명 없이 이장 일괄확인 ③ 규산질비료는 현지 미확인 (입상석회고토비료는 현지 확인)
	○○지점	○	×	○	○	② 농가서명 없이 이장 일괄확인
	○○지점	○	×	○	○	② 농가서명 없이 이장 일괄확인
	○○지점	○	×	○	○	② 농가서명 없이 이장 일괄확인
	○○지점	○	×	○	○	② 농가서명 없이 이장 일괄확인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주의】 향후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 현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정하여 보조금 정산업무가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